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 050050호

「2025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(수출물류)」 참가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예산 소진 시 까지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5. 19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접수방법

- 신청접수 홈페이지를(<http://logistics.gepa.kr>)를 통한 선착순 접수

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마케팅팀 (☎ 054-470-8561, 8539)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(고객의 소리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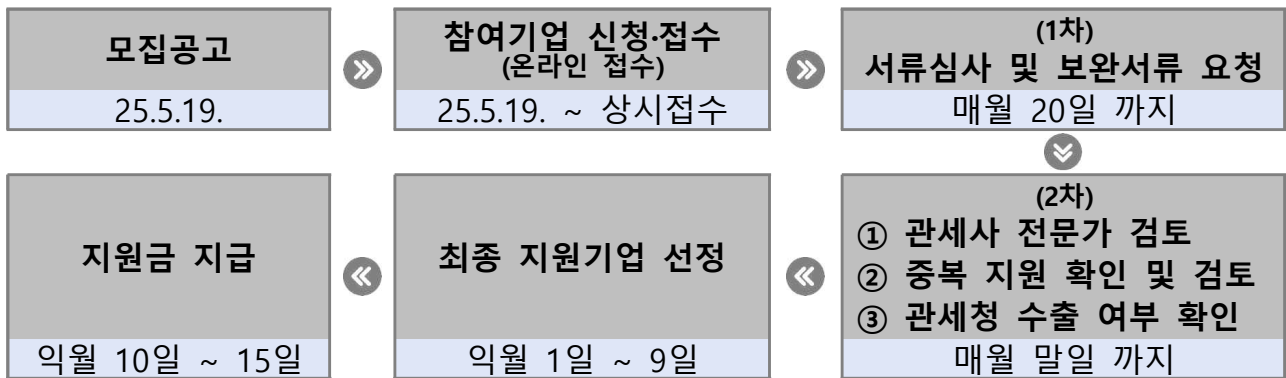
선정결과 통보

- 기업별 개별 통보(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)

1. 사업개요

○ 사업명	: 2025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(수출물류)
○ 사업내용	: 도내 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부담 완화
○ 지원대상	: 도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 중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 ※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, 제조 시설 면적 500㎡ 미만으로 건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로 명시된 기업
○ 지원규모	: 240개사 정도 ※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○ 지원내용	: 지원 대상 기간(2024.12.1. ~) 이후 선적된 수출물류비 실비(일부) 지원 ※ 대상 기간 내 중복 신청 건 지원 제외
○ 지원금액	: 기업당 최대 7백만원(보편관세 시행일(2025.4.5.) 이후 미국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기업 15백만원) ※ 부가세 제외
○ 신청방식	: 수출물류비 홈페이지(http://logistics.gepa.kr)를 통한 선착순 접수 ※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○ 신청서접수기간	: 2025.5.19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2.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

- (사업목적)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
- (지원대상)
 - 2024년 12월 ~ 2025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도내 제조 중소기업

- 도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기업 중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
 - ※ 공장등록증 미보유시, 제조시설면적 500㎡ 미만으로 건물 건축물대장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로 명시된 기업
- 지원 대상 기간: 2024.12.1. 이후 선적된 수출물류비 ※ 중복 신청 건 지원 제외

□ (지원금액)

- 지원한도: 기업당 최대 7백만원(보편관세 시행일(2025.4.5.) 이후 미국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기업 15백만원)(부가세 제외)
 - ※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

□ (지원내용) 지원 대상 기간(2024.12.1. ~) 내 선적된 수출물류비(국제 운송비 등 4개 항목) 실비

지원항목		세부 지원내용	비고
국제 운송비		해상 및 항공 운임	할증료(유류, 환율) 포함
국외 창고비	보관료	창고 보관료	무역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활용
	작업료	입고료 및 하차료, 하역료, 보험료 등 작업료	
국외 내륙운송비		수출국(해외) 발생 수출운임	해외 내륙운송
견본품 및 수출 관련 서류 운송비		DHL, FEDEX 등 특송업체의 견본품 및 무역서류 운송료	항공 특송의 경우 AWB 필수 ※ EMS 지원 제외

※ 타 지원사업으로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(세부 지원조건)

- 수출기업이 국제운송조건[인코텀즈 2020]에 따른 국제 운송비(육상, 항공, 선박)를 부담하는 경우
- 수출자가 보세창고 보관료, 서류작업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
- 2024년 12월 ~ 경상북도에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(수출신고필증 제조자 기준)
 - 제조자가 '미상'이며 제조장소가 '99999'인 경우 수출화주 기준
- 경상북도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
- OEM(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)인 경우
 -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와 수출화주 모두 경북 소재
 -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
 - ① 제조자 -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/ 수출자 - 사업자등록증
 - ② 제조자와 수출자의 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(OEM 계약서, 거래내역서 등)
 - ※ 수출신고필증 상 '신고일자' 기준으로 대상기간(2024.12.1. ~) 해당

□ (지원 제외 대상)

-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[인코텀즈 2020] E, F 조건
- 국내 발생 통관 비용, 부가세 제외

- 수출자가 어음(신용장) 등으로 결제한 경우
- 중앙정부,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, 해당 건 지원 제외(중앙정부기관 수출바우처지원, EMS 해외물류비, 프라이드기업수출역량 Level-up,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, 물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등)

4. 참가기업 모집

- (모집기간) 2025.5.19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(모집규모) 240개사 정도
- (모집대상) 도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 중소·중견기업
※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
- (신청방법) 수출물류비 홈페이지(<http://logistics.gepa.kr>) 접수 / 선착순

순번	신청 절차	세부 내용	비고
1	회원가입 및 로그인	기업회원으로만 신청 가능	
2	체크리스트 확인 및 작성	자격 및 서약서 등 동의	
3	기업정보 및 지원금 신청내역 입력	기업 현황, 지원 신청금 세부 입력	
4	첨부파일 업로드	필수서류 미제출 시 미통보, 미선정	
5	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		

- (제출서류) ※ 서류별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, 압축파일 불가

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[양식]기업(개인)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•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¹⁾, 통장사본(기업명) 각 1부 •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•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※ 발급처: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협회 •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최근 1개월 이내) •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내) • 2025년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증 • 수출신고필증(지원금청구대상) • [양식]수출신고필증진위여부 확인파일 ※ 정확하게 기입, 엑셀파일 양식변경 불가 • Bill of Lading(선하증권), Air Waybill(항공화물운송장) ※ 선하증권의 경우, ORIGINAL 또는 SURRENDER B/L 스캔 파일만 인정(draft, check 등 미인정)
운송비 확인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상, 항공운송 : 전자세금계산서, 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 등 • 특송(EXPRESS) : 물류비인보이스, 결제영수증 등 • 국내외 창고비용 : 전자세금계산서, 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 등 • 수출국 내륙운송 : 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 등 ※ 지원대상일자(2024.12.1. ~) 수출물류비 청구 대상 지출 증빙

1) 500㎡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인 경우

※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

- 수출신고필증-B/L(AWB) 선적 확인 검토 서류
 - 수출신고필증-B/L순서 동일하게 기재 및 파일순서 배치하여 업로드

<참고자료> 운송비 지급 관련 제출서류 세부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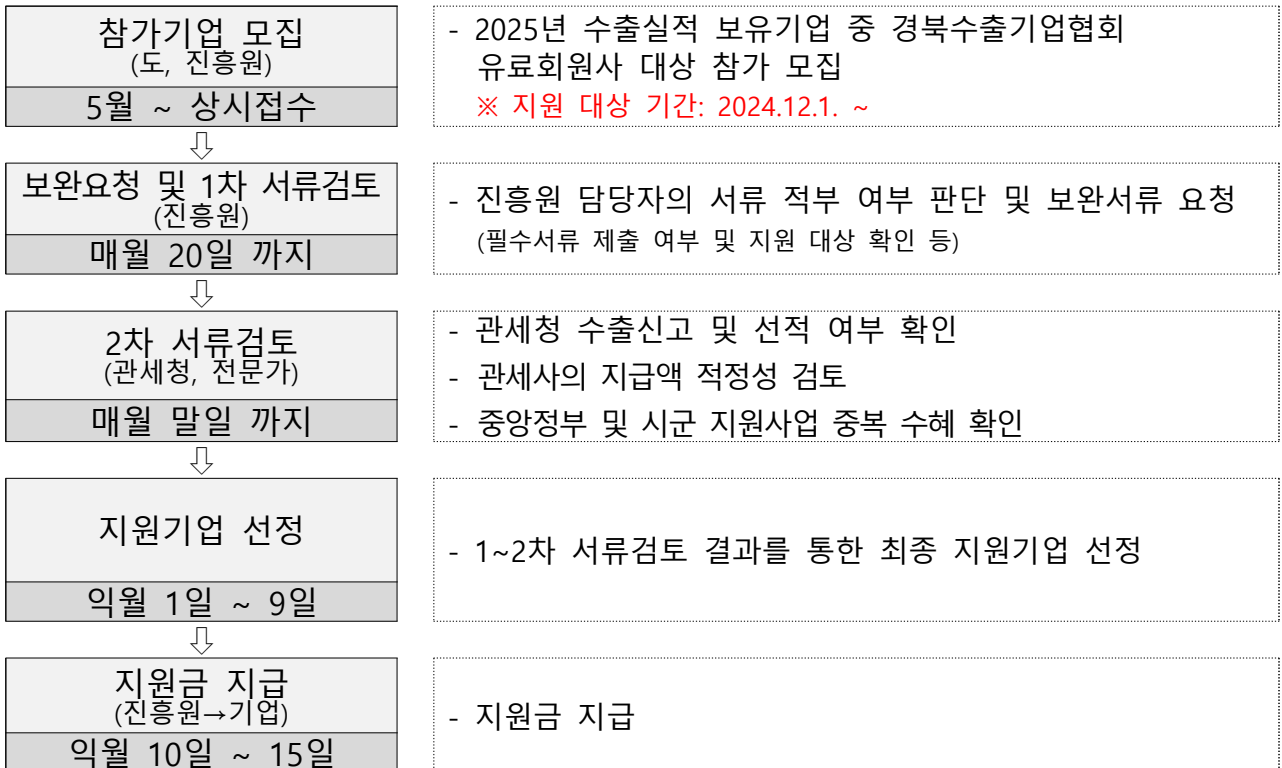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	비고
해상, 항공운송(CARGO)	전자세금계산서, 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	상업송장(C/I) 제출 미지원
특송(EXPRESS)	물류비인보이스, 카드결제영수증	카드결제
	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, 지로납부확인증	계좌이체
국외 창고보관	전자세금계산서, 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	
국외 내륙운송	물류비인보이스, 이체확인증	국내 내륙 운송 미지원

※ 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, 외화 지급 시 해당 일자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을 적용 금액 지급

5. 참가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

□ 참가기업 선정

- (선정방법) 제출서류 검토 후 선착순 지원
 - 서류평가: 진흥원 담당자의 제출서류 검토 후, 관세청 수출신고·선적 확인, 전문가 지급액 적정성 검토
- (선정절차)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(선정결과 안내) 기업별 개별 통보(또는 접수 홈페이지 내 '마이페이지' 확인)

□ 지원금 지급: 익월 10일~15일(예정)

□ 선정 제외/취소(지원금 환수)

- 신청 사실이 허위 또는 중복 수혜로 판명되었을 경우
- 경상북도에 공장을 둔 기업이 아닐 경우
- 신청한 기업명 이외에 타사(해외 현지법인, 대리점, 에이전트 등)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기업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(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)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6. 기타사항 및 문의

□ 기타사항

- 해당 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이며 국내 물류비는 지원 제외 대상임
- 참여 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 사업팀 선발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
- 최종 선정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선정에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차순위로 점수를 받은 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-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
- 선정 결과(점수 포함), 합격 또는 탈락 사유 등 심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www.gepa.kr)에 공고 예정

□ 문의

- 담당자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

- 전 화 054-470-8561, 8539

이메일 bc100@gepa.kr